

2025년도 한-중앙아시아 과학기술협력센터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한-중앙아시아 과학기술협력센터 사업의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15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상 임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I. 공모 개요

1. 사업개요

- (목적) 한-중앙아시아 과학기술협력센터를 구축하여, 한-중앙아 과학기술·ICT 분야 협력거점 역할 수행, 우수 연구자 교류, 공동 컨퍼런스 등 추진
- (필요성)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교류 협력 등 과학기술협력 합의에 따라 몽골 포함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국내 거점 구축 필요

2. 지원규모

- (과제수) 1과제
- (연구비) 연 4억원 이내(간접비 포함) ※ 1차년도 2억원 이내(6개월)
- (총 연구기간) 3년(2025.7.1. ~ 2028.6.30.) ※ 1차년도 연구기간 : 2025.7.1.~2025.12.31.(6개월)
 - ※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기간은 변동 가능
 - ※ 매년 성과점검(평가)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 등 결정

II. 공모 세부내용

1. 개요

□ 지원내용

- (센터장) 동 사업에 신청하는 연구책임자가 센터장직을 수행하며, 연구책임자는 센터 구축(공간 마련 포함)부터 센터 인력구성 및 사업수행 전체를 총괄함

□ (전담조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체계 구축

- (센터장) 사업·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사업수행·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가
- (전담인력) 센터장 포함 3명 이상 유지하되, 사업 수행규모 등에 따라 신규 채용 및 외부 파견 등 대응
- (공간 등)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공간·회의실 등 적정 공간 및 관련 기반시설 확보, 유관 부서·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 (인재 유치 활동·지원) 유학수요 발굴, 국내대학·현지대학 등 매칭*, 홍보설명회 개최

* 카자흐스탄 볼라샹, 우즈베키스탄 우미다 등 중앙아 자체 국가장학제도와 연계하여 국내대학 등과의 유치 수요 매칭 전략 마련, 기존 협력 중인 대학·연구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수요발굴 및 유치 확대 추진

- (네트워크 기반 구축) 국내 R&D 기술의 중앙아 지역 진출을 위해 현지 기술·산업 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

접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집행·관리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상세 계획 기재 필수(선정평가에 반영)
- ※ 직접비 내 인건비 현금 계상 및 연구수당 집행 계획 수립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근거한 계획 수립 필수
- ※ 간접비는 10% 산정

2.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기 주관연구기관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중앙아지역을 잘 이해하고 국제협력 분야 전문성, 조직경영에 대한 경륜·식견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경험이 있고 사업관리 및 조직관리 역량이 뛰어난 전문가
 - ※ 동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활동 불가
 -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제한 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책’,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공’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타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과제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 · 공동 ·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상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가능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5.4.15.(화) ~ 2025.5.14.(수)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5.4.15.(화) ~ 2025.5.15.(목)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협약용)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4.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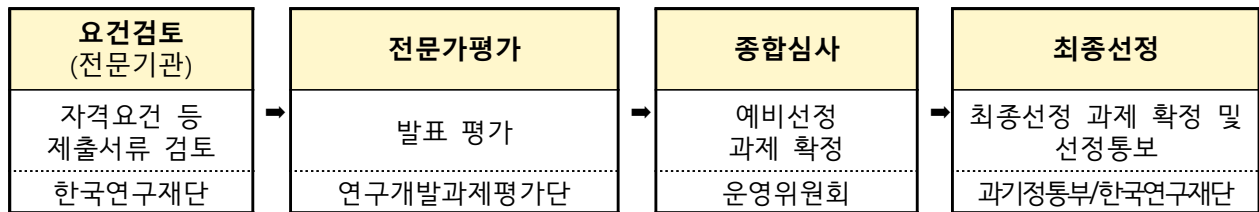
- 응모자가 선정 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함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반영 요구되며 필요시 지원 중단 또는 교체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5. 평가방법

※ 세부 평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



- 요건검토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 자격요건 검토 ※ 미충족시 평가대상 제외
- 전문가 평가 :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 발표평가 또는 비대면 심층평가 등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종합심사 : 정책적 기본 방향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및 예비선정 과제 확정
- 최종선정 : 과기정통부 선정과제 최종 확정 및 한국연구재단 선정과제 통보

□ 선정평가 지표

구분		내용	배점
추진 전략 및 추진 계획		■ (목표) 센터 운영 목표 및 연차별 성과목표 적절성 ■ (조직) 센터 인적·물적 자원 조직구성 체계 및 운영방안 적절성 ■ (예산집행) 센터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과 구체성 ■ (추진계획) 센터 핵심 수행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적절성 ■ (성과확산) 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및 성과확산 방안	50
수행 기관 역량	조직 운영 기반	■ (역량) 센터 운영 잠재 역량 및 발전 가능성 ■ (인력) 전문인력 확보·구성·운영 방안 ■ (공간)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업무 공간 확보 방안 ■ (기타) 기타 수행기관의 추가 지원 사항의 적절성	30
	센터장	■ (전문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분야 전문성 ■ (조직운영)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조정·관리 능력 ■ (소통협력) 국내외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 (리더십) 국제협력 현황 이해도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능력 ■ (외국어) 국내외 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영어 구사 능력	20
합계			100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변경 가능

6. 추진일정(안)

일정	내용
2025.4.15.(화) ~ 2025.5.14.(수) 18:00까지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5.4.15.(화) ~ 2025.5.15.(목)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5. 5월 말~6월 초	선정평가
2025. 7. 1.	신규과제 연구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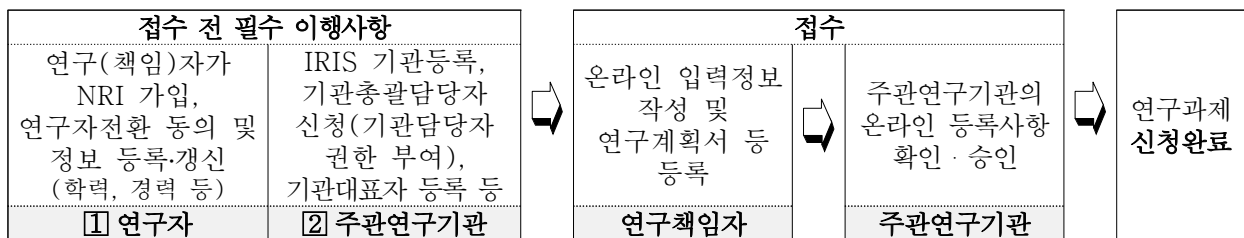
III.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IRIS)

▶ 2025년도 한-중양아시아 과학기술협력센터 사업의 신규과제 접수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 (<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①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②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IV. 문의처

- 제도·정책 관련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044-202-4342)
- 사업신청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네트워크팀(02-3460-5682)

[참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나. 연구시설·장비비
-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